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3138호

제출년월일 2022. 11. 17. 제 출 자 김 현 주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김포시 재정실정에 맞게 반영 하여 효율적인 교육예산편성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2조의 본문 내용 일부 수정 및 단서조항 삽입. 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11. . ~ 2022. 11.

나) 예고결과 :

2) 부서협의

가) 협의기간 : 2022. 11. . ~ 2022. 11. .

나) 협의결과 :

3) 관련부서 : 교육청소년과

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"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"를 "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에서"로 하고, 단서조항으로 "다만,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"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	제2조(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
한) 김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	한)
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, 초ㆍ중ㆍ고	
등학교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 교	
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	<u>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</u>
분의 5 범위 내에서 김포시(이하 "	범위에서
시"라 한다)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	
지원할 수 있다.	<u>다만, 시장이 교육발전을</u>
	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	<u>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

현행조례

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11조제8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김포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2.15>
- 제2조(지원대상 및 보조 기준액의 제한) 김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김포시 관내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김포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7.3.2, 2018.2.9, 2019.2.15>
- **제3조(보조사업의 범위)**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"보조사업"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1.7.26, 2019.2.15>
 - 1. 학교의 급식시설·설비사업
 - 2.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
 - 3.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 - 4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 - 5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 - 6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간 설치 사업
 - 7.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사업<신설 2020.10.30.>
 -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

[제7조에서 이동 <2020.10.30.>]

- 제4조(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)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**제5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 정 2019.2.15>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2.15>

- 1. 김포시 교육업무 국·과장급 공무원
- 2.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
- 4. 학교 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9.2.15>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9.2.15>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육업무담당팀장이 된다.<개정 2019.2.15>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
- 2.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
- 3.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
- 4.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, 연구, 용역 등을 한 경우
- 2.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서 회피하여야 한다

[본조신설 2014.10.10.]

제6조의3(위원의 위촉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- 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- 2.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[본조신설 2019.2.15.]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.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제8조(보조금의 신청)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2.15>

- 1.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, 주소
- 2.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
- 3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
- 4.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
- 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1.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
- 2.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
- 3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
- 4. 보조사업의 효과
- 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19.2.15>
- **제9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**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
 - 2.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
 - 3. 금액산정의 착오여부
 -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
- 제10조(목적 외 사용금지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9.2.15>
 - 1.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
 - 2.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
 - 3.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<신설 2019.2.15>
 - 4.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<제3호에서 이동 2019.2.15>
- 제11조(학교시설의 주민 이용)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2.15>
- 제12조 (보고 및 검사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

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<개정 2016.10.31>

-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제2항 삭제.제3항에서 이동 2019.2.15>
- **제13조(보조금의 집행)**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0.9.29.>
-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조례 제1757호, 2020.10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보조사업의 범위) 「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제8호 "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1.11.8.>

- 1.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 · 적성교육 등 특성화 지원사업
- 2.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사업
- 3.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지원사업
- 4. 방과후학교 운영사업
- 5. 중・고등학교 신입생 교복・체육복・일상복 구입비 지원사업 <개정 2021.11.8.>
- 6.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 지원사업 <개정 2020.3.25.>
- 7.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
- 8. 학생 안전을 위한 소규모시설 개·보수 사업(3천만원 이하)

제3조(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등)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한다.

- 1. 계속비 지원사업
- 2. 국 도비 지원사업
- 3.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경비 우선사업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1. 김포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- 3. 기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을 변경하여 추가로 교육경비를 요청한 경우

제4조(교육경비 보조금 부담비율) 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 보조금의 지원 부담비율은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 <규칙 제722호, 2021.11.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